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5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IV.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50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V. 검토내용

1. 금천구 결산 총괄

가. 2022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839,987,276,701	903,992,899,416	676,766,981,182	227,225,918,234
일반회계	821,824,651,001	887,199,647,186	667,761,923,172	219,437,724,014
특별회계	18,162,625,700	16,793,252,230	9,005,058,010	7,788,194,220

회 계 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52,968,679,616	21,535,322,570	-	21,284,764,096	△550,768,166		131,987,920,118
일반회계	50,768,679,616	20,349,055,030	-	21,251,764,906	△550,768,166		127,618,992,628
특별회계	2,200,000,000	1,186,267,540	-	32,999,190	-		4,368,927,49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03,992,899,416원으로 예산현액 839,987,276,701원보다 64,005,622,715원이 더 수납됨.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의 75%인 676,766,981,182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7,225,918,234원임.

이 중 명시이월비 52,986,679,616원, 사고이월비 21,535,322,57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0,733,995,93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 임.

나.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31,987,920,118	74,652,631,000	57,335,289,118	
일 반 회 계	127,618,992,628	68,215,001,000	59,403,991,628	
특 별 회 계	4,368,927,490	6,437,630,000	△2,068,702,510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131,987,920,118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6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6,437,63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59,403,991,628원과 특별회계 △2,068,702,510원을 합한 57,335,289,118원이 2023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다.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32,47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	2,840,656,150
일 반 회 계	32,333,993,000	7,256,904,000	4,416,247,850	-	2,840,656,150
특 별 회 계	140,000,000	-	-	-	-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473,993,000원으로서

전년도 15,715,733,000원보다 16,758,260,000원 증가하였으며,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28건으로 7,256,90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416,247,85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840,656,1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라. 기금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8,957	1,003	10,938	9,934	39,960
남북교류협력기금	101	52	52	-	153
재난관리기금	7,662	△849	3,978	4,827	6,8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303	497	497		17,800
중소기업육성기금	5,170	742	3,839	3,097	5,912
청년미래기금	1,532	528	528	-	2,060
자활기금	1,049	△133	26	159	916
노인복지기금	353	△1	6	7	352
양성평등기금	456	5	55	50	461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490	△13	25	38	477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290	19	26	7	309
옥외광고발전기금	1,138	△4	160	164	1,134
도로굴착복구기금	2,484	207	1,682	1,475	2,691
식품진흥기금	929	△46	64	110	883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8,957,445,18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937,544,44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34,459,692원이고
 차인잔액은 39,960,529,938원임.

2. 행정안전국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18,099,648,000	19,574,684,450	19,565,736,190	99.95%
행정지원과	8,120,231,000	8,444,453,980	8,443,385,770	99.99%
자치행정과	3,938,521,000	4,793,632,740	4,790,496,070	99.93%
교육지원과	3,104,293,000	3,370,803,420	3,370,797,440	99.99%
주민안전과	2,767,188,000	2,776,722,200	2,771,984,800	99.83%
민원여권과	169,415,000	189,072,110	189,072,110	100.00%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입 예산현액은 180억 9,96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5억 7,468만 4천원, 세입결산액은 195억 6,573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99.95%임.

나. 세출결산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171,410,043,330	139,162,849,484	17,415,654,326	2,962,040,219	11,869,499,301	6.92
행정 지원과	109,546,707,290	100,631,478,854	468,542,340	1,716,497,180	6,730,188,916	6.14
자치 행정과	20,049,619,340	15,564,894,076	2,745,241,980	151,512,659	1,587,970,625	7.92
교육 지원과	31,650,066,700	15,388,877,604	14,168,857,706	963,324,680	1,129,006,710	3.57
주민 안전과	9,007,013,000	6,497,702,160	33,012,300	130,705,700	2,345,592,840	26.04
민원 권과	1,156,637,000	1,079,896,790			76,740,210	6.63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출 예산현액은 1,714억 1,004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391억 6,284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4억 1,565만 4천원, 보조금반납금은 29억 6,204만원, 집행잔액은 118억 6,949만 9천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은 6.92%입니다.

1) 다음연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1,298,905	13,638,192	3,890,344	10,531,654	
자치 행정과	생활안전 CCTV 설치	4,288,654	2,315,925	1,500,683	1,900,000	(연도내 지출불가) '22년 10월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민의견 청취 장소 선정 등 사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교육 지원과	금천진로 진학센터 건립	7,057,971	5,196,832	1,017,572	3,510,226	(연도내 지출불가) '22년 11월말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다년도 사업으로 2022. 9월 착공하여 진행중(2022.9월~2024.4월)
	금천구 평생학습 관립	9,952,280	6,125,435	1,372,089	5,121,428	(연도내 지출 불가) 준공시기('24.2)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연도내 지출불가

○ 행정안전국 명시이월사업은 3건 105억 3,165만원 4천원임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계		21,620,010	14,181,003	4,657,721	6,883,998	
행정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	800,169	624,562	211,107	413,455	-노후펌프교체 : 자재수급 어려움 으로 펌프 제작에 시일 소요 -자동제어시스템 : 자재수급 및 설치 등에 8개월 소요
	관용차 량영	128,712	124,254	67,580	55,087	차량제작 지연
자치 행정과	생활안전 CCTV 설치	4,284,234	2,314,974	1,499,732	845,242	'21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동절기 도로굴착공사 불가로 연내 준공 불가로 이월
교육 지원과	금천혁신 교육지구 운영	625,192	608,948	574,831	34,117	학년 전환기 기간('22.11~'23.2)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맞춤형대입 지원정책 추진	675,661	649,896	439,555	210,341	학년 전환기(1~2월에 운영
	금천진로 진학지원센터 건립	6,126,966	4,560,287	804,528	2,013,982	다년도 사업으로 '22년 9월 착공하여 진행중
	금천평생 학습관립	8,903,910	5,223,120	1,018,438	3,278,762	준공시기('24. 2) 미도래로 인한 공사비 및 감리비 연도내 지출불가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주민 안전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75,166	74,962	41,950	33,012	특별조정교부금 12월 교부로 연내 미집행

○ 행정안전국 사고이월사업은 8건 68억 8,399만 8천원임.

2)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기획경제국			194,534,799	205,850	205,850	
행정 지원과	인력운영비 (기관운영)	101-01 보수	62,238,976	75,000		행정지원과-8657(2022.11.7.)호와 관련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지급을 위한 전용
		204-02 직급보조비	2,409,488		75,000	
		101-01 보수	62,163,976	120,000		
		304-02 국민건강보험금	2,563,951		120,000	
		101-01 보수	62,043,976	5,000		
		204-02 직급보조비	2,484,488		5,000	
자치 행정과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25,027	5,000		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 방역활동 지원에 따른 예산 전용
	민간단체 지원	301-09 행사실비지원금			5,000	
주민 안전과	자율방재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917	850		주민안전과-5173(2022.10.26.)호와 관련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운영 지원을 위한 전용
		301-09 행사실비지원금			850	

- 행정안전국 예산의 전용은 3개부서 5건 2억 585만원으로서, 행정지원과 3건 2억, 자치행정과 1건 500만원, 주민안전과 1건 85만원임.

3)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 별						
				보 조 금 정산잔액	낙 차	찰 액	계 획 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 잔	출 액	예 비 비
계	171,410,043	11,869,499	6.9	2,146,569	164,677	282,546	9,275,707	0		
행정지원과	109,546,707	6,730,189	6.1		25,042	200,480	6,504,667			
자치행정과	20,049,619	1,587,970	7.9	68,555	34,176	20,000	1,465,239			
교육지원과	31,650,067	1,129,007	3.6	75,795	25,166	7,000	1,021,046			
주민안전과	9,007,013	2,345,593	26.0	2,002,219	66,862	24,836	251,676			
민원여권과	1,156,637	76,740	6.6		13,431	30,230	33,079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집행잔액은 118억 6,949만 9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6.9%임.
-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1억 4,656만 9천원, 낙찰 차액이 1억 6,467만 7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254만원 6천원, 지출잔액 92억 7,570만 7천원임.

다. 기금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7,764,097	-797,371	4,029,610	4,826,981	6,966,726
남 북 교 류 기 재 난 관 리 기 금	행정지원과	101,504	51,713	51,963	250	153,217
	주민안전과	7,662,593	-849,084	3,977,647	4,826,731	6,813,509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기금, 주민 안전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40억 2,961만원이며 사용액은 48억 2,698만 1천원으로 최종 2022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9억 6,672만 6천원임.

라. 예비비 결산현황

1)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사유
	단 위	세 부	통계목					
합 계				3,123,200	1,136,550	0	1,986,650	
행 정 지원과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체계 유지	코로나19 예방 지원	의료 및 구료 비	79,200	79,200		0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 및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 시행, 키트 수급 불안정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보호 위한 긴급 예비비 지출
교 육 지원과	즐거움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교 만들기	안 전 하 고 친 환경 적 인 교육환경조성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 상 금	17,000	15,000		2,000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 회의 결과(21.1.21) 자치구 재난지원 사업 실시 결의에 따라 재원 마련
	온 종 일 돌 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7,000	27,000		0	
주 민 안전과	재 난 안 전 관 리	재 난 방 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 상 금	3,000,000	1,015,350		1,984,650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재해·재난목적예비지 지출액은 11억 3,655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9억 8,665만원임.

3.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6.92%임.
- 교육지원과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44.7%인 141억 6,885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인건비 예산의 경우 매년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저해가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임.
- 행정안전국 일부 예산 전용내용을 보면 당초 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적정 편성을 못한 것으로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행정안전국 세출결산 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관계 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